

(별지 제1호 서식) (냅치)

양식수산물재해보험(부활)청약서

상 품 종 류 :
가입설계번호 :
증 권 번 호 :

청약일 : 년 월 일 보험기간 : . . ~ . . .

[보험계약자 및 일반사항]

이름 :	주민/사업자등록번호 :		
주소 :			
보험기간 :	납입방법 :	단체가입여부 :	
신규구분 :	구증권번호 :	전계약자와의관계 :	

[담보사항 및 보험가입내역]

양식장명 :	양식방법 :	권역 :		
양식장 소재지 :				
부호	구분	가입금액	보험료	자기부담금
1	주계약(양식수산물)			
2	자연재해원인 수산질병손해담보특약			
3	자연재해원인 전기적장치위험보장특약			
4	양식시설물손해담보특약			
5	보험료분납특약			
[최종가입금액]			[최종보험료]	

■ 양식시설물 세부가입내역

--	--

※ 무게 100g 미만의 냅치와 시설물 중 비닐 및 보온덮개는 보험목적물에서 제외됩니다.

[보험료 납입]

구분	1회차	2회차	3회차	4회차	합계
납입기일					
계약자분					
국고보조					
총보험료					

[부활사항]

최종납입일 :	계약해지일 :	연체이자 :	부활보험료 :
---------	---------	--------	---------

[타보험 가입사항]

회사명 :	상품명 :	가입금액 :	만기일 :
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보험약관과 청약서부분(수산질병진단의뢰 안내서 포함)을 전달 받았으며, 청약사항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약관에 명시된 '계약내용의 교환' 조항에 동의합니다.			
계약자 :			(인)
※ 청약서만으로는 보험계약효력이 없으므로 전산 발행된 보험증권을 확인 후 같이 보관하십시오. 책임개시일 이후 1회 보험료를 납입하시는 경우 청약서 상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책임개시가 됩니다.			
이 계약의 인수를 담당한 본인은 계약자의 실명을 확인하였고, 상기 청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계약자에게 분명히 안내·설명하였으며, 계약자 본인이 이를 확인하여 자필서명하였음을 확인합니다.			
확인자 :			(인)
보험취급점 :	[☎]	담당자 :	[☎]
보험모집점 :	[☎]	권유자 :	[☎]

다음장의 [꼭 아셔야 할 사항]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.

발행일 :

양식수산물재해보험 (부활)청약서

상품종류 :
 가입설계번호 :
 증권번호 :

[꼭 아셔야 할 사항]

<p>■ 보험에 가입하실 때</p> <p>① 보험계약 청약서는 인쇄된 내용을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신 후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. ②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 ③ 보험료를 내실 때에는 반드시 수협이 발행한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④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손해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. ⑤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주어야 합니다. 만약,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약관에 의거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. ⑥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약관에서 정한 철회를 제한한 기간에는 예외로 합니다. ⑦ 이 보험계약은 체결 시에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가치(이하 “보험가액” 이라 합니다)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 시에 보험가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평가보험입니다. - 보험가입금액을 시가보다 낮게 정하면 납입보험료 부담은 줄어드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줄어든 비율만큼 적게 보상받고, 시가보다 높게 정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실제로 입은 손해액만큼 보상받게 됩니다. - 보험계약자가 보험목적물의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거나 경기변동 등으로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초과보험(보험가입금액>보험가액)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을 이유로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경우 수협은 보험가입금액의 조정을 통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. - 또한 초과보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자가 사고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보상한다는 손해보험의 보상원칙에 따라 계약체결 시점에 설정하신 보험가입금액보다 적은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. ⑧ 수협이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.</p>	
<p>■ 보험에 가입하신 후</p> <p>① 보험증권을 받으시면 청약서 내용과 다름이 없는지 또는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② 청약서 기재사항에 변동사항(보험목적의 양도 또는 임대, 건물이나 시설의 구조 또는 용도변경,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등)이 있거나 또 다른 보험(공제)에 가입하실 경우 수협에 즉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 ③ 양식수산물 변경 기록지는 매월 또는 수협이 요구하는 때에 제출하셔야 하며, 그렇지 않은 경우 보상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④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협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. ⑤ 손해가 생긴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협에 알려서 필요한 절차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⑥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/p>	
<p>■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</p> <p>계약자는 청약서 수협에 알려야 할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수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아래 내용은 약관에 의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포함되므로 사실대로 정확히 분회에 알려야 합니다. ① 보유 중인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에 관한 사항 : 청약서 부속서류(양식장원장)에 기재하고 양식시설물 도면을 첨부해 주십시오. ② 타보험 가입사항 : 다른 보험회사에 양식수산물 또는 양식시설물과 관련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청약서 해당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.</p>	

[질권설정 사항]

질권자	(인)	질권자 실명번호	
질권설정대상		질권설정 금액	양식물 시설물
소유자동의	(인)		원 원

[청약철회 신청서]

<p>본인은 귀 수협에 청약한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오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.</p>			
증권번호 :	신청일 :	년	월 일
계약자 :	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:		
(주 소) :	전화번호 :		
<p>※ 계좌 송금을 원할 경우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		
은행명 :	은행	예금주 :	계좌번호 :
<p>< 청약철회 신청 안내 ></p> <p>①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(우편송부시는 우체국 소인 기준)에 청약철회신청서와 보험가입증서(보험증권)를 등기우편으로 발송(취급점포 주소)하거나 본인이 직접 내방하시면 되며, 수협은 청약철회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. ② 청약철회 신청서를 발송한날 이후(발송일포함)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수협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③ 계좌송금인 경우 반드시 계약자 본인의 예금계좌만 가능합니다.</p>			

■ 청약서 작성 원칙

- ① 청약서는 계약자가 양식장별(양식장원장 하나에 청약서 하나)로 작성하되, 전산가입설계 후 청약서의 [보험계약자 및 일반사항]과 [담보사항 및 보험가입내역], [보험료 납입] 항목 등을 전산인자 처리할 수 있다.
- ② 청약서의 기재사항은 계약자가 직접 작성하고 반드시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로 직원이 대필한 경우와 전산으로 청약서를 출력한 경우에도 **계약자가 직접 이름을 쓰고 서명(날인)**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청약서 작성시 **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분**(수산질병진단의뢰 안내서 포함) 수령여부를 확인한다.
- ④ 효력상실된 계약을 부활하고자 할 때에도 신계약에 준하여 부활청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.

■ 청약서 작성요령

[보험계약자 및 일반사항]

- ① 계약자 :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말하며, 이름(법인명), 주민/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
- ② 주소 : 주소는 우편송달이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③ 보험기간 :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, 보험종목별로 장기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3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. 보험시기는 **청약 승인일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기재합니다.**
※ 보험시기를 소급하는 경우에도 보장은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개시됨을 유의합니다.
- ④ 보험료 납입방법 :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, 자부담보험료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회 또는 4회 까지 분납이 가능하므로 선택하여 기재합니다. 다만, **집중재해기간(5월 ~ 6월)에는 2회분납만 가능**합니다.(다만, 장기계약은 집중재해기간에 불구하고 4회분납 가능)
- ⑤ 단체가입여부 :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의한 어촌계 또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거나 조성한 양식단지로서 그 단체의 구성원이 5인 이상으로 동시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“예”, 그 이외에는 “아니오” 라고 기재하며, “예” 라고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자 모두가 날인한 『단체가입 신청서』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⑥ 신규구분 : 처음 가입할 때에는 “신규”, 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“계속계약” 이라고 기재합니다.
- ⑦ 구 증권번호 : 계약을 갱신할 경우 종전 증권번호를 기재합니다.
- ⑧ 전 계약자와의 관계 : 계약을 갱신할 경우로서 양식장의 양도 등으로 종전 계약자와 새로운 계약자가 다를 경우 그 관계(가족, 동업, 관계없음 등)를 기재합니다.

[담보사항 및 보험가입 내역]

※ 아래 중 ⑨~⑫번 항목은 계약자가 작성한 양식장원장을 근거로 전산원장 등록시 자동 출력됨

- ⑨ 양식장명 : 해당 양식장명(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함)을 기재한다. 동일한 양식장 명칭으로 2건 이상 가입할 경우에는 양식장명 다음에 계약자명 또는 식별 가능한 명칭을 괄호 안에 부기합니다.
- ⑩ 양식방법 : 육상수조식, 해상가두리, 수하식 등 양식방법을 기재합니다.
- ⑪ 권역 : 1 ~ 12권역 중 해당 권역을 기재합니다.
- ⑫ 양식장 소재지 : 육상의 경우에는 번지까지 해상의 경우에는 동리(지선)까지 기재합니다.

- ⑬ 가입금액(주계약 = 자연재해원인 수산질병손해담보특약) : 보험기간 중 최대보유량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결정하여 기재하되, 일부보험(보험사고발생시 **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20%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적어지게 됨**)이 되지 않도록 적정가입금액을 정하도록 합니다. 특히 최대보유량의 50%미만으로 가입금액을 정할 경우 계약인수 거절사유에 해당하므로 유의합니다.
- ⑭ 가입금액(양식시설물손해담보특약) : 양식시설물의 재조달가액과 감가상각액을 고려하여 계약자가 결정하여 기재하되, 일부보험(보험사고발생시 **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20%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적어지게 됨**)이 되지 않도록 적정가입금액을 정하도록 합니다.
- ⑮ 보험료 : 보험가입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.
- ⑯ 자기부담금 :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보험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으로 10%, 15%, 20%, 25%, 30%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하여 기재합니다.
 ※ 자기부담비율을 높게 설정하면 보험료는 내려가지만 사고발생시 본인 부담액은 많아지게 되며, 자기부담비율을 낮게 설정하면 보험료는 올라가지만 사고발생시 본인 부담액은 적어지게 됨
- ⑰ 최종가입금액 / 최종보험료 : 주계약가입금액(보험료)와 특약가입금액(보험료)를 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.
- ⑱ 양식수산물 세부가입내역 :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수산물별로 가입금액을 정하여 기재하되, 세부가입금액을 합한 금액은 주계약 가입금액과 같아야 합니다.
- ⑲ 양식시설물 세부가입내역 : 양식장원장에 기재된 시설물 중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해 종류별(관리시설, 양식시설, 방재시설 등)로 가입금액을 정하여 기재하되, 세부가입금액을 합한 금액은 양식시설물손해담보특약 가입금액과 같아야 합니다.

[보험료 납입]

- ⑳ 회차별 납입기일 : 1회차는 보험기간의 전날이며, 2~4회차는 1회차 납입기일로부터 2개월, 4개월, 6개월입니다.
- ㉑ 계약자분 보험료 = 총보험료 - 국고보조금
- ㉒ 국고보조금 = 총보험료 × 국고보조율
- ㉓ 총보험료 = 최종보험료(⑰)

[부활사항] ※ 아래 항목은 효력상실 계약을 부활할 경우에만 기재합니다.

- ㉔ 최종납입일 : 실효된 계약의 최종 분납보험료 납입일
- ㉕ 계약해지일 : 실효 해지된 날을 기재
- ㉖ 연체이자 : 없음
- ㉗ 부활보험료 : 미납된 분납보험료 총액(국고보조분 포함)

[타보험 가입사항]

양식수산물 또는 양식시설물에 대하여 다른 보험사에 보험(화재보험 등 포함) 이 있을 경우에 회사명, 상품명, 가입금액, 만기일 등을 기재합니다.

[질권설정사항]

보험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함에 따라 보험계약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코자 할 경우 질권자와 소유자가 연서하여 기재합니다.

[청약철회신청서]

청약한 계약을 철회코자 할 경우에 기재합니다. 그러나, 보험약관상 집중재해기간(5월1일 ~ 6월30일)은 철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.